

## 10. 土地去來許可 · 申告區域 指定

資料提供 : 建設部

건설부는 백제문화권개발, 고속국도건설 및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라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5년의 기간으로 지정한 신고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신고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거래부진 및 지가안정으로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재지정에서 제외하였다.

### -허가구역 추가지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설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지역과 고속국도 인터체인지건설 주변지역 및 아산공단등 대단위 개발사업 주변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2도 1시 9군 2,077.61km<sup>2</sup>)한 것으로

- 이중에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과 관련된 지역은 1시 2군 146.44km<sup>2</sup>이며

충남 공주시 검양동

공주군 이인면

부여군 부여읍 비죽지지역, 규암면

- 아산공단등 대단위 개발사업 관련지역은 2도 5군 1,538.79km<sup>2</sup>이고

충남 단양군 합덕읍 비죽지지역, 고대면, 대호지면, 정미면,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예산군 예산읍 비죽지지역, 삼교읍 비죽지지역,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기규제구역 제외), 봉산면, 길덕면, 신암면, 오하면

홍성군 홍성읍 비죽지지역, 광천읍, 비죽지지역, 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결성면, 서부면, 구항면

서산군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성연면, 음암면, 고북면

충북 진천군 덕산면, 백곡면, 이월면

